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추가〉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49호, 제2205250호, 제2205251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II . 검토의견	7
1. 개정안의 주요내용	7
2. 검토의견	10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준 · 이기현 · 황정아 · 진선미 · 허 영 · 정성호
강유정 · 천준호 · 모경종 · 한민수 · 김성희 · 추미애
정진욱 · 윤종균 · 박희승 · 이훈기 의원(16인)

2) 제 안 일 : 2024. 11. 5.

3) 회 부 일 : 2024. 11. 6.

※ 의안번호 : 524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준 · 이기현 · 황정아 · 진선미 · 허 영 · 정성호
강유정 · 천준호 · 모경중 · 한민수 · 김성희 · 추미애
정진욱 · 윤종균 · 박희승 · 이훈기 의원(16인)

2) 제 안 일 : 2024. 11. 5.

3) 회 부 일 : 2024. 11. 6.

※ 의안번호 : 525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박성준 · 김 현 · 이기현 · 황정아 · 진선미 · 김용민
허 영 · 정성호 · 강유정 · 천준호 · 모경중 · 한민수
김성희 · 추미애 · 정진욱 · 윤종균 · 박희승 · 이훈기의원(18인)
 - 2) 제 안 일 : 2024. 11. 5.
 - 3) 회 부 일 : 2024. 11. 6.
- ※ 의안번호 : 525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③ ~ ⑧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표-2]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 략)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현행	개정안
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u>한국은행 총재</u>·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 ----- ----- ----- -----<u>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한국은행 총재</u>-----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표-3] 국회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	개정안
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u>한국은행 총재</u>,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3. (생략) ③ ~ ⑥ (생략)	-----. 1. ----- ----- ----- ----- ----- ----- -----<u>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u>, <u>한국은행 총재</u>----- -----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4]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단체·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¹⁾

[표-5] 국가인권위원회 직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목적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향상
직무	◦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 이행에 관한 연구·권고·의견표명 ◦ 인권 관련 단체·개인·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협력 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및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 인권위원은 아래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1인 포함) -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장 선출	◦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 또는 대통령 지명을 통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차관급²⁾)으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직무를 수행함.³⁾ 특히,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함.⁴⁾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차관급임.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에게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추가적인 책무가 부여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한 것은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상임위원 후보자의 인권의식, 중립성 및 자질을 검증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을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군인권보호관의 역할 및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참고로, 현재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의 경우 ①위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거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위원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⁵⁾

문 의 처
02)6788-5015

5) 현행법상 위원장과 위원 중 1인에 대해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사례는 없음.



도입 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지명)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 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